

## 인증지원

## 인증

## 벤처기업 확인제도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제도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   지원대상 : 중소기업

전담기관 : 벤처기업협회

## ■ 지원대상

| 벤처유형          | 기준요건   | 전문평가기관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유형1<br>벤처투자기업 |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<br>2.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<br>3.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일 것  |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         |
| 유형2<br>연구개발기업 |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<br>2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<br>3.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% 이상<br>4.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| 신용보증기금<br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
| 벤처유형          | 기준요건  | 전문평가기관  |
|---------------|---|---|
| 유형3<br>혁신성장유형 |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<br>2.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| 기술보증기금<br>나이스평가정보<br>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<br>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<br>한국농업기술진흥원<br>한국발명진흥회<br>한국생명공학연구원<br>한국생산기술연구원<br>한국평가데이터 |
| 유형4<br>예비벤처기업 | 1.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<br>2.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 | 기술보증기금  |

## ■ 지원내용

| 구분  | 내용  |
|-----|---|
| 세제  | 법인세·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% 감면<br>·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)<br>취득세 75% 감면<br>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<br>·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|
| 금융  |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<br>· 일반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<br>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<br>· 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<br>·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<br>·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→ 10억원 이상<br>·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<br>·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 |
| 입지  | 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<br>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내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(2배)·등록면허세(3배)·재산세(5배) 증과 적용 면제   |
| M&A |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|

| 구분   | 내용   |
|------|--|
| 인력   |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<br>·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<br>· 창작전담요원의 수: 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   |
|      |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<br>· 임직원 → 기술·경연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 |
|      |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<br>· 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20% → 벤처기업 50%  |
| 광고   | TV·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, 정세가 기준 35억원(105억/3년) 한도<br>TV·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(택 1): TV 최대 50% · 라디오 최대 70% 지원<br>· 대상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|
| 인증마크 | <br>벤처확인기업<br>Venture Enterprise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 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(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)

## ■ 신청방법

| 구분        | 내용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확인결과 안내기간 | 접수완료(수수료 납부)일부터 45일 이내 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
| 기업        | 확인기관  | 전문평가기관 | 벤처기업확인위원회 | 확인기관   |
| 신청        | 접수  | 평가     | 심의        | 확인서 발급 |
| 신청방법      |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www.smes.go.kr/venturein/)을 통한 온라인 신청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

## ■ 문의처

-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(smes.go.kr/venturein)
- 벤처기업확인기관 상담센터 (☎ 1566-6487)

| 인증지원   |
|--|
| <h2>인증</h2> <h3>신기술(NET) 인증제도</h3> <p>국내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</p> <p><b>신청시기</b>: 1,2,3분기 <b>지원대상</b>: 대·중견·중소기업<br/><b>전담기관</b>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</p> |

## ■ 지원대상

- (신기술 인증대상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시행령 제18조2
  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(이하 "실증화 시험")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  -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- (신청자격)
  -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, 대학, 연구기관의 대표(장)

## ■ 지원내용
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
  - ① (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)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
  - ② (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)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
  - ③ (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)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